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**보도참고자료** | 힘내라 대한민국 |
|---|---|---|

**배포 즉시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20. 8. 25.(화) | 담당부서 |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재석 팀장(044-203-5895) | 담 당 자 | 조동후 사무관(044-203-5894) |

#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, 9월부터 시행

**-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(8.25) -**
**- 국비-지방비 분담 통해 피해금액의 100% 지원키로 협의 -**
**-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중 -**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「**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**」 **일부개정령(안)**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**9월부터 시행**된다고 밝혔다.

□ **(시행령 주요 내용)** 금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따라 **피해구제 지원이 9월부터 시행**됨에 따라 **피해구제 지원 대상, 지원금 결정기준, 지급절차**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❶ **(지원대상)**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△사망·상해 입은 자(인명피해), △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(재산피해)

❷ **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**

○ **(인명피해) 치료비, 장례비, 요양생활비, 사망·장해지원금**의 합산액

○ **(재산피해) 피해금액은 물건피해, 휴업기간의 고정비용, 임시 주거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,** 피해유형별 **지원한도 내**에서 **피해금액의 80%**를 국비로 지원

**<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>**

| 구분 | | 지원한도 | 구분 | 지원한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주택 | 수리불가 | 1억2천만원 | 소상공인, 중소기업 | 1억원 |
| | 수리가능 | 6천만원 | 농·축산·어업 | 3천만원 |
| | 가재, 부속물 등 | 2백만원 | 종교시설, 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| 1억2천만원 |
| | 세입자 | 6백만원 | | |

* 사립유치원, 사립 초·중·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 지원



❸ **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**

○ **(신청·접수)**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**신청서**에 피**해사실·금액 증명서류**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

○ **(사실조사)**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**피해현장 방문, 신청인 면담, 서류 확인**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

○ **(결정·송달/지원금 지급)**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**결정서 작성** 후 신청인에게 **결정통지서**를 **송달**하고, **송달 1개월 내 지원금 지급**

❹ **(특별지원방안 마련절차) 포항시 경제활성화·공동체회복**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시 **관계 지자체와 협의**하고, **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**을 청취

□ **(피해금액 100% 지급)** 정부와 지자체는 **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**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%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며,

○ **피해금액의 80%**는 국비로 지원하고, **피해금액의 20%**는 **경상북도와 포항시**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**(법률 개정)**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**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**를 위한 **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**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① 피해구제지원금의 **지방비 부담 근거**, ②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**재심의 근거 조항**, ③ 손해배상 청구권 **소멸시효 연장**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.

□ **(포항 경제활성화)** 한편,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**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**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제정 TF 조동후 사무관(☎ 044-203-58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붙임** **「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」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**

## □ 추진 배경

○ 포항지진의 **진상 규명**과 지진 피해자에 대한 **피해구제**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**「포항지진의 진상 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정**('19.12.31 공포, '20.4.1 시행)

○ **피해자 인정** 및 **피해구제 지원**에 관한 조항(14조, 16조)이 '20.9.1. 시행 예정(9월부터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접수 예정)

⇨ 피해구제 **지원 대상, 지원금의 결정기준** 및 **지급절차, 피해자 인정** 등에 필요한 사항 등 **법률에서 위임된 사항**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

## □ 주요 내용

### ① 피해구제 지원대상 (안 제11조)

- (**지원대상**)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△사망·상해 입은 자(인명피해), △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(재산피해)

### ② 지원금 항목 및 결정기준 (안 제12조, 별표 1 및 별표 2)

○ **인명피해 : 피해항목별 지원금 합산금액**

| 피해 항목 | 지원금 결정 기준 |
|---|---|
| **치료비** | **건강보험 요양급여** 또는 **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** 中 **본인 부담금** |
| **장례비** | **日평균임금**(보통인부 일용노동임금) **80일분** |
| **요양생활비** | **日평균임금** × 피해정도별 지급비율(10~30%) × 치료기간 |
| **사망·장해지원금** | **月평균임금**(평균임금 30일분) × 피해정도별 지급비율(175~500%) |

○ **재산피해 : 피해금액 산정 → 지원비율(피해금액 80%) → 유형별 한도 적용**

① **피해금액 : 물건피해 + 휴업비용 + 임시주거비용**

| 피해 항목 | 피해금액 산정 기준 |
|---|---|
| **물건피해** | 지진당시 **교환가액**(수리 불가능시), **수리비**(수리 가능시) |
| **휴업비용** | **휴업기간**(물건 수리·교체기간)의 **고정비용**(임차료, 인건비, 보험료 등) |
| **임시주거비** | 주택피해에 따른 **임시주택 주거비용**(임대료, 보증금이자 등) |



② **지원비율 : 피해금액의 80%** (국비 지원)

* 지방비 20% 추가 지원(향후 지방비 부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)

③ **유형별 한도 적용**

| 피해 유형 | 지원 한도 |
|---|---|
| **주택** | **(수리不可)** 1억2천만, **(수리可)** 6천만, **(세입자)** 6백만, **(기타재물)** 2백만 |
| **주택 外** | **(소상공/中企)** 1억원, **(농축산어업)** 3천만, **(종교·사립보육 등)** 1억2천만<br>* 사립 유치원, 사립 초중고는 피해복구금액(100%) 지원 |

※ 지원금 결정시 **국가배상금** 또는 **타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**을 지급(또는 지급확정)받은 경우 ⇒ **해당금액 제외하고 지원금 지급**(법 제34조)

### ③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(안 제13조 ~ 제16조)

◇ 4단계(신청·접수 → 사실조사 → 결정·송달 → 지원금 지급)로 구분

○ (**신청·접수**)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**신청서**에 **피해사실·금액 증명서류**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

* 본인, 법정대리인(미성년), 유족(사망자) 등이 신청(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)

○ (**사실조사**)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**피해현장 방문, 신청인 면담**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

* 서류만으로 확인 가능, 일정금액 이하 피해인 경우 등은 서류만으로 조사 실시

○ (**결정·송달**)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금액 결정시 **결정서 작성** 후 지체없이 **결정통지서**를 신청인에게 **송달**

○ (**지원금 지급**) 결정통지서 **송달 1개월 내**에 지원금 지급

### ④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방안 마련 절차 (안 제17조 )

○ 국가는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마련시 관계 **지자체 협의** 및 **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 청취**를 거침